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2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3. .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제안이유

교하·조리면이 교하읍, 조리읍으로 읍 설치가 승인되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에 따라 정원이 증원되어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충수를 조정하고자 함.

□ 주요 골자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규정(안 제2조)

- 총 정 원 : 807명 → 833명 (증 26명)
- 집행기관 : 789명 → 815명 (증 26명)
- 의회사무기구 : 18명 → 18명

※ 신규정원 승인 내역

구 분	계	일 반 직					기능직	비고
		소계	6급	7급	8급	9급		
계	26	26	4	6	-	16	-	
읍 승격	19	19	4	6	-	9		
사회복지직	7	7	-	-	-	7		

☐ 개정조례(안) : 별 첨

☐ 기타 참고 사항

○ 교하읍·조리읍 설치 승인 공문 사본

○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 시달 공문 사본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807명”을 “833명”으로 하고, 동조 제1호중 “789명”을 “815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총 무 과 940-4127
입 안 자	총 무 과 장	홍 덕 기
	시 정 담 당	기 우 균
	담 당 자	김 영 준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807명</u>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789명</u> 2. (생략)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833명</u> ----- -----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815명</u> 2. (현행과 같음)

읍 설 치 승 인 서

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읍설치를 승인합니다.

2002년 3월 7 일

행 정 자 치 부 장



☐ 승인내용 : 경기도 파주시 교하·조리읍 설치

☐ 읍설치내역

시도·시군구	신설읍의 명칭	관할구역
경기도 파주시	교하읍(交河邑)	종전 파주시 교하면 일원
	조리읍(條里邑)	종전 파주시 조리면 일원

☐ 시행일 : 자치단체 조례시행일

붙임 2

地方公務員 定員承認書

정 원 승 인 서

<경기도>

기 관 명		직 위	직 급	인 원	비 고
파주시	교하면	면장 담당	행·농 5급	△ 1	폐지
			6급	△ 4	
			7급	△ 4	
			8급	△ 7	
			9급	△ 3	
			기능직	△ 1	
		소 계		△20	
	교하읍	읍장 담당	행·농 5급	1	
			6급	6	
			7급	7	
8급			7		
9급			9		
		기능직	1		
	소 계		31		
중 감			중 11		
※ 정원시행일 : 조례시행일					
- 이 하 여 백 -					

정 원 승 인 서

<경기도>

기 관 명		직 위	직 급	인 원	비 고
파주시	조리면	면장 담당	행·농 5급	△ 1	폐지
			6급	△ 4	
			7급	△ 4	
			8급	△ 7	
			9급	△ 4	
			기능직	△ 1	
		소 계		△21	
	조리읍	읍장 담당	행·농 5급	1	
			6급	6	
			7급	7	
			8급	7	
			9급	7	
			기능직	1	
		소 계		29	
	증 감			증 8	

※ 정원시행일 : 조례시행일

- 이 하 여 백 -